



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.

시 보

www.namwon.go.kr

선 람	기관·의·장

제 51 호 2015. 5.27(수)

공 고

- 남원시 승화원·승화당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.....1
- 남원시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공고15

회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※ 발행 : 남원시 / 편집 : 홍보전산과 ☎(063)620-6039

남원시공고 제2015-692호

남원시 승화원승화당 설치 및 사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5년 5월 일

남 원 시 장

남원시 승화원승화당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1. 개정이유

가. 승화원·승화당사용료 관외지역 적용의 형평성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해 인근지자체(장수군, 임실군, 순창군)와 그 외 지역을 차등 적용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

나. 그 밖에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따라 정비

2. 주요내용

가. 생활권역인 인근지자체의 승화원? 승화당 이용률 제고를 위해 사용료 기준마련과 이용 확대

나. 인근지자체(장수군, 임실군, 순창군) 화장 및 봉안사용료 기준완화

3. 참고사항

가.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6월 16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(참조 : 여성가족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 제출 사항
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)
-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의견 제출할 곳 : 우 590-701
남원시 시청로 60(도통동 518번지) 남원시청 여성가족과
- 의견 제출 방법 : 서면, 팩스(063-620-6744) 및 직접방문 등

남원시 승화원 · 승화당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15. 6.
제 출 자 : 남 원 시 장
제안설명자 : 여성가족과장

1. 개정이유

승화원 · 승화당사용료 관외지역 적용의 형평성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해 인근 지자체(장수군, 임실군, 순창군)와 그 외 지역을 차등 적용 하여 내실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생활권역인 인근지자체의 승화원·승화당 이용률 제고를 위해 사용료 기준마련과 이용 확대(안 별표)

[승화원 · 승화당 사용료]

시설별	구 분	현행 금액(원)		개정후 금액(원)			비 고
		관내	관외	관내	관외		
					인근지자체	그 밖의 지역	
승화원	사채(15세 이상)	60,000	500,000	60,000	400,000	500,000	
	사채(15세 미만)	40,000	300,000	40,000	300,000		
	사 태	20,000	150,000	20,000	150,000		
	개장유골	30,000	300,000	30,000	300,000		
승화당	구분없음	100,000	300,000	100,000	300,000	500,000	

- 인근지자체(장수군, 임실군, 순창군) 화장 및 봉안사용료 기준완화
나. 그 밖에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따라 정비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 :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간: 2015. 5. .~ 6. .(20일간)

- 결 과:

2) 비용추계서: 해당 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: 해당 없음

남원시 조례 제 호

남원시 승화원·승화당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남원시 승화원·승화당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남원시 승화원·승화당 설치 및 사용조례”를 “남원시 승화원·승화당 설치 및 사용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승화원, 승화당(이하 “승화원 및 승화당”이라 한다)”을 “승화원·승화당”으로, “사용에 관하여”를 “사용에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승화원 및 승화당”을 “남원시 승화원·승화당(이하 “승화원·승화당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3조 중 “승화원 및 승화당”을 “승화원·승화당”으로 한다.

제4조 제1항 중 “승화원 및 승화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”을 “승화원·승화당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삭제

제4조 제3항 중 “없는 한 즉시 이를”을 “없으면 즉시”로 한다.

제5조 제1항 중 “승화원 및 승화당을 사용하고자 하는”을 “승화원·승화당을 사용하려는”으로,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사용료는 이를”을 “사용료는”으로 하며, 같은 항 단서 중 “다만, 시”를 “다만, 남원시”로, “그러하지 아니한다”를 “예외로 한다”로 한다.

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승화원·승화당”을 “승화원”으로 한다.

제7조 제1항 단서 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한다.

제7조의2 제2항 중 “경우”를 “경우에는”으로 한다.

제8조의 제목 “(유골함 및 납골카드)”를 “(유골함 및 봉안카드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의한다”를 “따른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납골사향”을 “봉안사향”으로, “기재한 납골(유골)카드”를 “적은 봉안(유골)카드”로 한다.

제9조 중 “승화원 및 승화당”을 “승화원·승화당”으로, “명하거나”를 “하게 하거나”로 한다.

제10조 중 “시행에 관하여”를 “시행에”로 한다.

별표 및 별지 제1호서식, 별지 제2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16. 1.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남원시 승화원 · 승화당 설치 및 사용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에 따라 남원시 <u>승화원, 승화당(이하 “승화원 및 승화당”이라 한다)</u>의 설치 및 <u>사용에 관하여</u>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위치) <u>승화원 및 승화당</u> 위치는 남원시 솔터길 40-36(광치동 690-1번지)에 둔다.</p> <p>제3조(관리) <u>승화원 및 승화당</u>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남원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따로 정한다.</p> <p>제4조(사용허가) ① <u>승화원 및 승화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<u>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각</u></p>	<p><u>남원시 승화원 · 승화당 설치 및 사용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<u>승화원 · 승화당</u>----- ----- -----<u>사용에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조(위치) 남원시 <u>승화원 · 승화당(이하 “승화원 · 승화당”이라 한다)</u>-----.</p> <p>제3조(관리) <u>승화원 · 승화당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4조(사용허가) ① <u>승화원 · 승화당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<u>삭 제</u></p>

호와 같다.

1. 승화원: 사용을 원하는 모든 신청자

2. 승화당 : 개장한 분묘의 소재지가 남원인 경우이거나 사망한 사람의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가 남원에 있는 경우로 한다. 다만,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러지 아니한다.

③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를 허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

제5조(사용료) ① 승화원 및 승화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시의 책임있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6조(사용료 감면) 다음 각 호의

③-----

없으면 즉시-----

-----.

제5조(사용료) ① 승화원·승화당을 사용하려는-----
-----따른-----
-----.

②-----
사용료는-----
--. 다만, 남원시-----

---예외로 한다.

제6조(사용료 감면) -----
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승화원·승화당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.

1.·2. (생략)

제7조(승화당의 유골봉안) ① 유골의 봉안기간은 10년으로 한다. 다만, 사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.

② ~ ④ (생략)

제7조의2(화장잔류물 등의 처리)

① (생략)

② 유족이 반환을 원하지 않거나, 화장 후 미 인계된 치금혼합물 등의 화장잔류물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장잔류물 수거 및 인수대장을 작성하고 사무실 창고 또는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치금혼합물 등의 화장잔류물은 가격평가 후 공매처분 할 수 있다.

제8조(유골함 및 납골카드) ① 유골을 봉안하는 유골함의 규격은

-----승화원-----

1.·2. (현행과 같음)

제7조(승화당의 유골봉안) ① ---

---따라-----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7조의2(화장잔류물 등의 처리)

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경우에는-----

③ -----

공매처분할-----.

제8조(유골함 및 봉안카드) ① --

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②시장은 승화당에 유골을 봉안할 때에는 승화당 사용자와 사망자와의 관계, 납골사항 및 유골 인도인수사항 등을 기재한 납골(유골)카드 등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.

제9조(원상복구 및 변상) 시장은 승화원 및 승화당 사용자가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-----따른다.

②-----

-----봉안사항-----

-----적은 봉안(유골)카드-----

-----.

제9조(원상복구 및 변상) -----
-----승화원 · 승화당-----

-----하
게 하거나-----
-----.

제10조(시행규칙) -----시행에

-----.

[별표]

승화원 · 승화당 사용료 (제5조 관련)

시설별	구분	금 액 (원)			비 고
		관 내	관 외		
			인근지자체	그 밖의 지역	
승화원	사체 (15세 이상)	60,000	400,000	500,000	○관내: 사망자의 주소·등록기준지가 남원인 경우 ○관외: 사망자의 주소가 남원이 아닌 경우로 인근지자체는 장수군, 임실군, 순창군 ※모든 신청자는 주소·등록기준지 무관하게 사용가능
	사체 (15세 미만)	40,000	300,000		
	사 태	20,000	150,000		
	개장유골	30,000	300,000		
승화당	구분없음	100,000	300,000	500,000	○관내 - 개장유골의 분묘소재지가 남원이거나 사망자의 주소가 남원인 경우 - 개장유골의 분묘 소재지가 남원이 아니라도 사망자의 등록기준지가 남원인 경우 ○ 관외 - 인근지자체: 장수군, 임실군, 순창군 - 그 밖의 지역

[별지 제2호서식]

제 호 <h2 style="margin: 0;">남원시 승화원(승화당) 사용허가증</h2>				
사 망 자	성 명			
	생년월일			
	주 소			
	사망장소		사망사유 및 사망년월일	
신 청 인	성 명			
	생년월일		사망자와의 관 계	
	주 소			
<p>「남원시 승화원·승화당 설치 및 사용조례」 제4조제3항에 따라 남원시 승화원(승화당) 사용을 허가함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margin-top: 20px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margin-top: 20px;">남 원 시 장 인</p>				

남원시 승화원·승화당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비용추계 대상 여부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되어 **비용추계 대상이 아님.**

※ 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

제3조(작성대상)

-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.
-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.
- ③ 「지방자치법」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.
-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. 단,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1. **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**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3.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

의견제출서

1. 의견제출 목록		남원시 승화원·승화당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(안)
2. 제출자	성명(명칭)	
	주 소	
3. 의 견		
4. 기 타		

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(의견제출 및 처리)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15년 월 일

의견서 제출인 주 소 :
 성 명 : (서명 또는 인)
 전 화 :

남원시장 귀하

비 고	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. 2.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 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----	---

남원시공고 제2015-694호

남원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5년 5월 27일

남 원 시 장

남원시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폐지 입법예고

1. 폐지이유

가. 행정자치부에서 불필요한 등록규제 개선 및 폐지 정비계획을 검토한 결과 화장문화 정착으로 많은 비용이 필요한 공설묘지 설치는 비효율적이며 현재 우리시는 공설묘지가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「남원시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」 폐지

3. 의견 제출

가. 이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남원시장(여성가족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반여부와 이유)

○ 제출자의 성명(법인,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주소 및 전화번호

나. 의견제출할 곳 : 우 590-701 / 남원시 시청로 60 / 남원시청 여성가족과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서면, 팩스, 직접방문,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.

라.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원시청 여성가족과(063-620-619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남원시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15. 6.
 제출자 : 남 원 시 장
 제안설명자 : 여성가족과장

1. 폐지이유

행정자치부에서 불필요한 등록규제 개선 및 폐지 정비계획을 검토한 결과 화장문화 정착으로 많은 비용이 필요한 공설묘지 설치는 비효율적이며 현재 우리시는 공설묘지가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「남원시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」 폐지

3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규: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
- 나. 그 밖의 사항
 - 1) 입법예고
 - 기 간: 2015. 5. ~ 6. (20일간)
 - 결 과:
 - 2) 비용추계서: 해당 없음
 - 3) 성별영향분석평가: 해당 없음

남원시 조례 제 호

남원시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

남원시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의견제출서

1. 의견제출 목록		남원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(안)
2. 제출자	성명(명칭)	
	주 소	
3. 의 견		
4. 기 타		

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(의견제출 및 처리)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15년 월 일

의견서 제출인 주 소 :

성 명 :

(서명 또는 인)

전 화 :

남원시장 귀하

비 고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. 2.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 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리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----	--